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28
----------	------

2021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 1. 제안이유

-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 교육감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특정업무 수행의 업무 공백 방지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별정직공무원 정원 증원하며,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등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78명 (7,627명 → 7,705명)

-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증 63명 (7,056명 → 7,119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5명 (565명 → 580명)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1)

- 지방공무원 종류 구분 자구 수정: 일반직 → 일반직·특정직
- 일반직·특정직 비율 조정: 감 0.1% (99.9% 이상 → 99.8% 이상)
- 별정직·정무직 비율 조정: 증 0.1% (0.1% 이내 → 0.2% 이내)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2)

- 제4호 별정직공무원 구분 및 비율 조정
  - 구분 조정: 5급상당, 6급상당 →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 비율 조정: 4급상당 15%이내, 5급상당 55%이내, 6급상당 이하 30%이상

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 78명 (7,627명 → 7,705명)
- 일반직 계: 증 57명 (7,059명 → 7,116명)
  - 4급: 증 1명 (39명 → 40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 증 1명 (28명 → 29명)
  - 5급 이하 소계: 증 57명 (6,976명 → 7,033명)
  - 전문경력관 소계: 감 1명 (8명 → 7명)
- 별정직 계: 증 6명 (2명 → 8명)
  - 4급상당: 증 1명 (0명 → 1명)
  - 5급상당 이하 소계: 증 5명 (2명 → 7명)

- 특정직 계: 증 15명 (565명 → 580명)
  -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증 1명 (50명 → 51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 : 증 1명 (28명 → 29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 증 14명 (515명 → 529명)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28호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서울시교육청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개편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정원 57명과 별정직 정원 6명, 그리고 특정직 정원 15명 등 총 7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동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의 총수를 7,627명에서 7,705명으로 조정하고,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을 ‘일반

직’에서 ‘일반직·특정직’으로 변경하며, 그 기준비율을 ‘99.9%이상’에서 ‘99.8%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비율’은 ‘0.1%’에서 ‘0.2%’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별정직 공무원 기준에 ‘4급상당’을 추가하여 그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표-1] 동 조례안 별표에 대한 신규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구 분	일반직.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9% 이상	0.1% 이내	비 율	99.8% 이상	0.2% 이내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4. 별정직공무원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구 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비 율	15% 이내	55% 이내	30% 이상

- 이와 같은 정원 조정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비통보(학교정책과 -5719, 2021.9.30.)에 따른 기준인원과 총액인건비(7,721명, 6,212억 1천 5백만원)를 고려하여 현행 정원(7,627명)을 78명 증가(3억 9천 3백만원 증가)한 7,705명 규모로 조정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정원 조정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비통보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현재 일반임기제 4급으로 되어있는 교육감 비서실장의 직렬을 일반임기제공무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별정직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는 비서실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감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4급 유보정원은 추후 의회의 동의 없이 내부 승진을 위한 별도 정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조직정원 운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

구 분		현 재	증감	변 경(안)	비 고
정무직	교육감	1	-	1	
일반직	4.5급 이상 소계	61	1	62	
	5급 이하 소계	6,976	57	7,033	
	전문경력관 소계	8	△1	7	
	연구사 소계	14	-	14	
	<b>일반직 계</b>	<b>7,059</b>	<b>57</b>	<b>7,116</b>	
별정직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2	5	7	
	<b>별정직 계</b>	<b>2</b>	<b>6</b>	<b>8</b>	
특정직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1	51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15	14	529	
	<b>특정직 계</b>	<b>565</b>	<b>15</b>	<b>580</b>	
<b>지방공무원 전체</b>		<b>7,627</b>	<b>78</b>	<b>7,705</b>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정원 조정은 통상적으로 매년 초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 규모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금번 정원 조정은 총액인건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특수교육과 신설과 미래학교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에 있어 이를 정원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은 기존 조직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바, 신설 부서의 설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교육감의 임기가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않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더욱이 조직개편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확한 조직진단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 등의 검토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금번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이러한 조직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3] 2022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

【본 청】			【교육지원청】	【직 속 기 관】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교육장	학교보건진흥원					
초등교육과(3)	민주시민생활교육과(10)	교육시설안전과(6)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보건·환경지원과	급식지원과	급식운영과	산업안전·보건	
초등교육과정	생활교육	시설기획	학교시설지원과	행정지원	보건지원	급식품질관리지원	안심급식운영	산업안전·보건	
기초학력·방과후학교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미래학교추진	사설1	환경지원	식생활교육·지원	급식위생관리			
초등인사	상담·태안교육	시설개발	사설2	흡연예방지원					
	성평등	시설관리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교육공간기획							
	특수교육	공공건축지원센터							
	통합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청: 1실 3국 7담당관 12과 91담당</li> <li>★ 교육 지원 청: 2국 8과 19담당</li> <li>★ 학교보건진흥원: 5과</li> </ul>						



【본 청】			【교육지원청】	【직 속 기 관】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교육장	학교보건진흥원					
초등교육과(4)	민주시민생활교육과(8)	교육시설안전과(4)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보건지원과 구)보건·환경지원과	환경지원과 (신설)	식생활교육지원과 ⑤장학관 구)급식지원과	급식품질위생과 구)급식운영과	산업안전·보건과
초등교육과정	생활교육	시설기획	학교시설지원과	행정지원	건강증진	환경위생	품질관리	산업안전·보건	
기초학력·방과후학교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시설개발	학교시설기획 구)시설1	흡연예방지원	실내공기질	식생활교육	위생관리		
초등인사	상담·미용건강 구)상담·대안교육 대안교육	시설관리	학교시설개발 구)시설2						
초등교육·돌봄지원 (신설) ⑤교행	학교부청소년지원 (신설) ⑤장학관 (신설) ⑤교행	공공건축지원센터	학교시설관리 (신설)						
	성평등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청: 1실 3국 7담당관 13과 1추진단 95담당(1과 1추진단 4담당 중)</li> <li>★ 교육 지원 청: 2국 8과 20담당(1담당 중)</li> <li>★ 학교보건진흥원: 6과(1과 중)</li> </ul>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27”을 “7,70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056”을 “7,119”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65”를 “580”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8% 이상	0.2% 이내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36% 이내	23.5% 이상	0.2% 이내	0.03% 이내	0.2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삭제

3. 연구직공무원: 삭제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 율	15% 이내	55% 이내	30% 이상

5.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 · 교육연구관	장학사 · 교육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b>총계</b>	<b>7,705</b>				
<b>정무직 계</b>	<b>1</b>				
교육감	1		1		
<b>일반직 계</b>	<b>7,116</b>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0		29	11	
4·5급	9		7	2	
5급 이하 소계	7,033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b>별정직 계</b>	<b>8</b>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b>특정직 계</b>	<b>580</b>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29				